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. 11. 20 선고 2020가합10221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등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준식, 김기훈

피고B

변론 종결 2020. 10. 16.

판결 선고 2020. 11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19. 6. 4.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드합100232 사건의 2019. 6. 4.자 '조정을 갈음하는 결정'에
근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청구한다.

2. 자백간주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재판장판사조영호

판사이준범

판사김용석

별지